

---

# 2022년도 하반기 자체감사 주요 지적 사례

---



2023. 8.

서울대학교  
[감사팀]

##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 정기교육 이수 관리 부적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sup>1)</sup>은 연구실책임자<sup>2)</sup>(교원)로 하여금 연구활동종사자<sup>3)</sup>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에 따르면 관리기관<sup>4)</sup>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실안전책임자<sup>5)</sup>(교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환경 교육 이수 조치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출입을 위한 최초 신규교육과 연구실 출입 유지를 위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신규·정기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연구실의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환경 정기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상황인데도 연구실 출입 제한 등 관련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더욱이 위 기관의 연구실책임자(교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환경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관리하는 등 각 연구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도 안전환경 정기교육 이수율이 연구원 및 대학원생 등보다 낮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 □ 연구실 안전사고 처리 부적정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실안전책임자는 안전사고의 사고 보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안전

---

1)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  
2)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교원)  
3) 각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연구실책임자 포함)으로,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생 및 연구원  
4)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대학(원),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  
5) 연구실을 사용하는 본교 교원으로서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

- 담당자<sup>6)</sup>는 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규정에 따르면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안전 책임자는 사고경위서를 3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과 환경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대한 안전사고 이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고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안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경위서와 사고 처리결과보고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하였고, 연구실 안전사고 관련으로 상해보험 청구가 된 사고 건을 환경안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 기관에서 연구실 사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보고 관리 소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 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실안전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sup>7)</sup>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 같은 규정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구실 내 위험물질을 관리하는 등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대상 연구실에서 연구안전 통합정보시스(SAFE)를 통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보고를 하지 않은 채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는데도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관리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

7)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미리 분석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이 대상이 됨

[관련 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 법인회계, 간접비, 발전기금회계의 예산집행 관련 지침에 따르면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지양하여야 하고, 각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소비적 부문 경비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허례허식 요인을 제거하여 검소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회의비 집행 시 회의 식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1인당 4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 기관 등은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법인회계와 간접비 재원으로 특급호텔 내 식당 등 고급 음식점에서 과도한 식대를 지출하거나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서 워크숍 명목으로 고가의 숙박비를 지출하였고,
  - ○○○○ 기관은 명절수당과 퇴직 기념품 등을 받은 교원에게 명절선물, 퇴임 기념 순금 감사패 등을 중복으로 지급하였으며, 기념품 명목으로 백화점상품권 등을 지급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예산회계 관리 지침]

## □ 직원 시간외근무 등 관리 부적정

-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르면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시간외근무 명령 사실과 출·퇴근 시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수기 근무상황부나 결재 시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수기 결과보고 자료를 통해 소속 직원의 시간외근무를 관리하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였고,

- ○○○ 기관은 소속 직원의 연가를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종이문서나 전자결재문서로 처리하여 직원이 본인의 연가일수를 수기로  
관리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